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4. 12. 8.

교육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 일자 : 1994년 12월 1일

○ 회부 일자 : 1994년 12월 1일

다. 상정 일자 : 제 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 8)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박 춘 용)

가. 제안이유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신 첨단산업기자재의 공동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제고토록하고,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수 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토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충청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충북공업고등학교(청주시 가경동 666번지)에 추가로 설치함 (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만)

충청북도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신 첨단산업기자재의 공동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제고토록하고,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수·학습 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토록 하려는 것이며
충북공업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려고 교육부로부터 이미 승인받은 사안으로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 : " 없 음 "

5. 토론요지 :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 없 음 "

※ 첨부서류

- 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